

##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항공기	제작자 주소		
	제작자 성명(명칭)		
	종류	국적 및 등록기호	
	형식	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	제작일자	
	감항증명유효기간	소음기준적합증명번호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항공안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3. 수리·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騒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